

의안번호	2200519
의 퇴 인	김한규 의원
회 답 일	2024. 6.27.
추 계 번호	24D0874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8조의8 (익명처리에 관한 심사 등)	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익명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,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익명처리 심사 및 익명정보 인정 업무에 대하여는 익명처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28조의9 (익명처리 전문기관)	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익명처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8조의8(익명처리에 관한 심사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8조의9(익명처리 전문기관)	

2. 상세 사유

□ 익명처리에 관한 심사 및 익명처리 전문기관 지정(안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익명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심사를 요청하고,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익명처리 심사 및 인정 업무를 익명처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러나 익명처리 전문기관 위탁 비용은 재량적 재정지출에 해당하며, 소관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익명처리 심사 요청 수요, 심사비용 부담자, 심사 및 관리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익명처리에 대한 기술적 정의 등이 명확하지 않아,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
- 참고로, 유사사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‘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’ 사업에서는 2024년 33억 2,800만원을 편성하여 가명정보제도 운영 3억 9,100만원, 가명처리기술지원 25억 3,700만원, 가명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4억원 등을 인터넷진흥원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음
 - － 익명처리¹⁾는 시간, 비용,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고, 가명처리²⁾는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1) 안 제2조(정의) 1의3. “익명처리”란 시간·비용·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.

2)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 1의2. “가명처리”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.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여은구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여은구	02-6788-4673	cecil@assembly.go.kr